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1. 9.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첨단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정용식, 사무관 정재원, 주무관 권혁진 • ☎ (044) 201-4315, 4241
보 도 일 시		2017년 11월 1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...장거리 수송, 야간공연 가능해진다

- ◆ 드론 야간·가시권 밖 비행 허용을 위한 특별승인제 도입
- ◆ 수색·구조,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 긴급비행 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적용
- ◆ 드론 조종자격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 마련 및 전문교육기관 내실화
- ◆ 무인항공산업의 종합적·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도입

야간 방송중계·비행공연, 도서(島嶼)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.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는 11월 10일(금)부터 드론 규제개선,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*들을 시행한다.

* 항공안전법·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‘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’ 제정

○ 이번에 도입되는 ‘드론 특별승인제’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,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·허용하는 제도이다.

* 드론 야간·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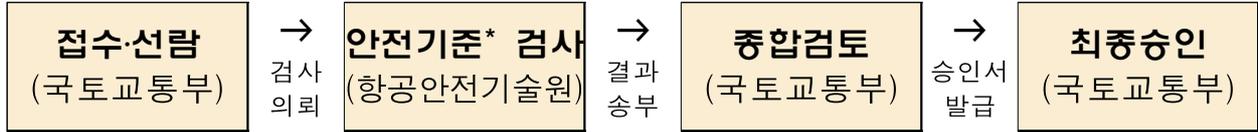
○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△드론의 성능·제원 △조작방법 △비행계획서 △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.

○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,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*,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승인한다.

*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 차등 적용 예정

※ 특별승인 시에도 25kg 초과 드론 비행 또는 비행금지구역·관제권 비행 시 기존 비행승인 필요

< 드론 특별승인 절차 >



* ‘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’(고시)

- **수색·구조, 화재진화**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. 국가기관,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**공익목적 긴급 비행***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,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**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**(자체규정 필요)를 받게 된다.

* ①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(搜索)·구조 ②응급환자 장기(臟器) 이송 등 구조·구급
③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(防除)·순찰 등

- 또한, 정부에서 드론산업을 보다 **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·제도적 근거**도 마련되며,

-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('15: 311명 → '16: 738명 → '17. 8.: 1,893명)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**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**와 **전문교육기관 내실화**를 위한 규정*들도 시행된다.

*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충족·유지 검사업무 신설 및 관련업무 교통안전공단 위탁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,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면서,

- “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·제도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 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43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